

관리자가
직접하는

복제 · 전송의 중단 및 기술적 조치 요청

가이드라인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권리자가
직접하는

**복제·전송의 중단 및
기술적 조치 요청**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와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 기술적 조치 요청 처리 절차 및 제반 사항 등은 저작권법에 근거 하되, 세부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에서 복제·전송 중단 및 기술적 조치 요청 가이드라인과 예시 파일(PDF)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은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Contents

I. 가이드라인 개요 • 4

II. 절차 • 12

II - ①. 「복제·전송의 중단」 절차 • 13

II - ②. 「기술적 조치」 절차 • 15

III. 가이드라인 • 16

III - ①. 「복제·전송의 중단」 가이드라인 • 17

1. (권리자)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 17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복제·전송의 중단 처리 / 23
3. (복제·전송자)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 25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복제·전송의 재개 결정 등 / 27

III - ②.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 28

- (권리자) 기술적 조치 요청 및 처리 절차 / 28

[붙임] 관련 서식 • 34

1.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 35
2. 복제·전송 중단 요청 위임장 서식(예) / 36
- 3-1. 복제·전송 중단 통보서(복제·전송자) / 37
- 3-2. 복제·전송 중단 통보서(권리주장자) / 38
4.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 39
5. 복제·전송 재개 통보서 / 40
6.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 41
7. 기술조치 요청 위임장 서식(예) / 43

[열린상담실 운영안내] • 44

—• outline

Procedure

guideline

Form

I 가이드라인 개요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목적

- ㉠ 본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기술적 조치」 요청 및 처리 등에 관한 전반적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 복제·전송 중단, 기술적 조치 요청서 작성법과 권리 소명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 원활한 복제·전송 중단, 기술적 조치 제도의 운용을 지원하여 **합법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건전한 저작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활용 방향

- ㉠ 권리자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대상 복제·전송 중단 및 재개 요청, 기술적 조치 요청 시 필요서류와 요청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 및 재개 처리, 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이드라인의 근거

- ㉠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복제·전송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 혹은 예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부과하고, 해당 조치를 취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상 저작물의 불법 복제·전송 등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은 2003년 제11차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사실(복제·전송)을 알고 즉시 이를 방지·중단시킨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등”을 규정[저작권법 제102조]
 - 저작권자(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절차를 수행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및 복제·전송 중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면제[저작권법 제103조]
- ㉡ 일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운영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2006년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저작권자(권리주장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작권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저작권법 제104조]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인 조치는 필터링(저작물등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및 복제·전송자에게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조치로 구분[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저작권법 제6장(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통해 정보화 사회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콘텐츠 유통을 위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p>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p>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권리자의 요청)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p>저작권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① 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가이드라인 용어 정의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 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권리주장자(저작권자 등)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자, 복제·전송 중단 요청자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 중단)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온라인상(인터넷)에서 저작물을 유통하거나 유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설비 등을 제공하는 자를 총칭

저작권법 제2조(정의)제30호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복제·전송자 : 온라인상에 저작물 등을 게시하거나 그로 인해 다른 이용자가 재생,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

저작권법 제2조(정의)제22호	저작권법 제2조(정의)제7호, 10호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	7. "공중송신"은 저작물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6호)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 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 요약 설명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공중에게 저작물등의 업로드·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제공·지불하도록 하거나, 저작물등의 업로드·다운로드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고 상업적 이익을 얻는 등의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웹하드사, P2P 업체를 들 수 있습니다.

기술적 조치 :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하며 권리자 요청 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의무적으로 조치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 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outline

• Procedure

guideline

Form

II - ① 「복제·전송의 중단」절차



구분	대상	내용	저작권법
복제·전송 중단 요청	권리 주장자	① 중단 요청(온라인 및 서류 접수) - 중단 요청서, 신분증 사본, 권리 소명 자료 등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등의 추가서류를 제출 ②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 권리주장자 정보 :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동의 등 - 중단 요청 저작물 정보 : 게시물명, 게시물 위치(URL) 등 ③ 권리 소명 자료 -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성명,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된 저작물 사본 등 (예) 저작자 성명이 표시된 어문저작물 표지, 방송정보(작가, 제작자 등)가 표시된 화면 이미지 등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저작권자 본인이 아닌 경우 처리가 불가 ※ 주의사항 :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한 권리주장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법 제103조 제6항)	제103조 제1항, 제6항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13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① 중단 처리 : 중단요구를 받은 즉시 복제·전송 중단 처리 ② 결과 통보 : 중단시kin 날부터 3일 이내 - 대상 : 권리주장자 및 복제·전송자 - 방법 :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에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첨부 ※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재(수령인)를 지정하여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표시(공지)하여야 함(수령인의 성명, 연락처 등)	제103조 제2항, 제4항 (시행령) 제41조, 제44조 (시행규칙) 제14조

복제· 전송 재개 요청	복제· 전송자	① 재개 요청 : 복제·전송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재개 요청서, 신분증 사본, 권리 소명 자료 등 ②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 재개요청자 정보 :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동의 등 - 재개 요청 저작물 정보 : 게시물명, 게시물 위치(URL) 등 ③ 권리 소명 자료 -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성명,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된 저작물 사본 등 - 저작자와 체결한 복제·전송 허락 계약서 사본 등 -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 보호기간 만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주의사항 :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청한 복제·전송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법 제103조 제6항)	제103조 제3항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1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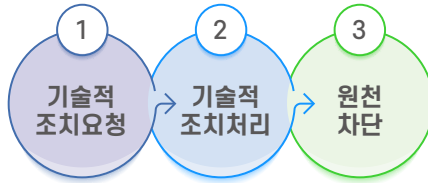


복제· 전송 재개 처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① 재개 결정 :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재개예정일 :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14일 이전 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날 ② 결과 통보 : 권리주장자에게 재개 결정 통보 -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재개 요청서 첨부	제103조 제3항 (시행령) 제43조 (시행규칙) 제16조



(또는) 삭제 상태 유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30일 내 재개 요청 미접수 혹은 재개 부적합 결정 등의 경우 게시물 삭제 상태 유지 → 권리주장자, 복제전송자 간 합의 혹은 관련 기관 및 소송 등에 의한 해결	-
----------------------------------	----------------------------	---	---

II - ② 「기술적 조치」절차



구분	대상	내용	저작권법
기술적 조치요청	권리자	① 기술적 조치 요청(온라인 등 접속)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신분증 사본, 권리자 저작물 자료 등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등의 추가서류를 제출 ②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 권리자 정보: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동의 등 - 기술적 조치 요청 저작물 정보: 저작물명(제호) ③ 권리자 소명 자료 및 저작물 증빙자료 -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성명,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된 저작물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저작권자 본인이 아닌 경우 처리가 불가	제104조 제1항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17조
		↓	
기술적 조치처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① 기술적 조치 처리 : 요청 즉시 이행 -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 적용 - 인정한 저작물의 불법 송신 차단을 위한 검색·송신 제한기술 적용 ※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는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저작권침해금지 등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포함	제104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46조
		↓	
원천 차단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불법 저작물 인식·전송 필터링 기술로 게시를 원천 차단 기술 지속 적용	-

out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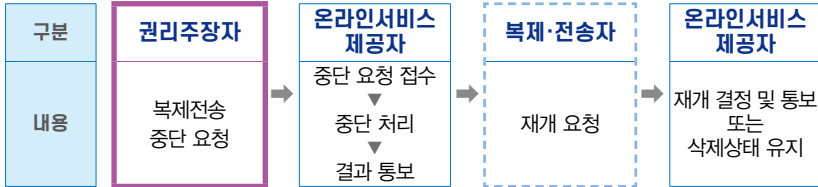
Procedure

• guideline

Form

III - ① 「복제·전송의 중단」가이드라인

1.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권리주장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요청방법**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저작권보호센터(혹은 침해신고 센터, 고객 센터 등)에서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위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거나, 서면 접수를 위한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휴대폰 및 아이핀 인증 등의 본인 확인→복제·전송 중단 요청 페이지 내에서 게시물 정보(게시물명, 위치 URL 등) 기재→신분증 사본, 저작권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파일 형식으로 첨부→요청 등록
 - (서류 접수)** 사이트 내 온라인 접수 기능이 없거나, 권리주장자가 온라인 접수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등,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안내된 메일이나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
- 필요서류** : 개인/법인, 본인/대리인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며,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타인에 의한 요청일 경우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개인	단체(사업자 또는 법인 등)
공통 (본인, 대리인)	①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저작권 증빙서류 ④ 진술서	①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저작권 증빙서류 ⑤ 진술서
대리인	⑤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⑥ 위임장(요청자 인감 또는 서명 날인)	⑥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⑦ 위임장(단체 대표의 인감 또는 서명 날인)

➔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작성 방법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6. 11. 8.>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일부)

1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자 (권리 주장자)	성명(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소	
2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저작물	저작물 명 (제호 등)	*대항일 경우 위쪽 사용
		위치정보 (URL 등)	*대항일 경우 위쪽 사용
3	대 리 인	성명(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소	
4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귀하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귀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하오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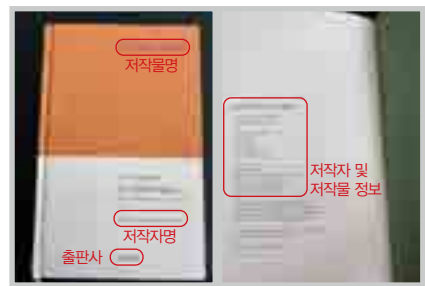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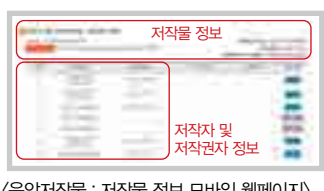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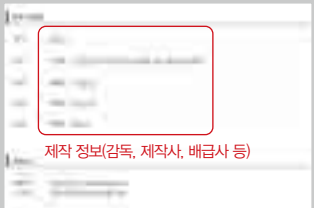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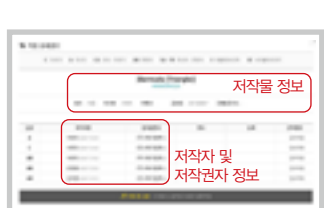
6
청부사유

1.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나.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름 등으로써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속관리업자 또는 해군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관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최초 소명자료 제출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관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상당한 관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취지의 전송서 1부

구분	내용
1	- 중단 요청자(권리주장자) 정보 기재 : 성명, 연락처 등 ※ 본인 확인(신분증 사본 등) 및 저작권 증빙자료와 일치
2	- 중단 요청저작물 정보 기재 : 게시물명, 게시물 위치정보(URL 및 고유번호 등) ※ URL의 경우 사이트 대표주소가 아닌 해당 게시물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상세 URL을 기재 (잘된 예) http://www.abc.com/1234567 혹은 abc사이트 내 영화)최신개봉)1234567 등 (잘못된 예) abc사이트의 대표주소인 http://www.abc.com 는 요청 게시물의 위치를 특정 못 함
3	- 대리인 신청의 경우, 권리주장자 외에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
4	- 신청날짜와 신청인의 성명 기재 후 서명(또는 도장 날인)
5	- 요청을 접수하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이트명을 기재 (예시) abc사이트 요청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abc 귀하"로 기재

➡ 복제·전송 중단 요청 첨부서류

● 저작권 증빙자료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자가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 ● 성명, 이명 등이 표시된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 (예시) 저작물명, 공표일, 저작자 등이 표시된 화면 캡처 이미지 혹은 표지 등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data-bbox="268 399 470 686">  <p>(저작권 등록증)</p> </div> <div data-bbox="515 399 940 686">  <p>(어문저작물(표지 등) : 저작자 및 저작물 정보)</p> </div> </div>
<p>6-1</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data-bbox="268 766 582 957">  <p>(음악저작물 : 저작물 정보 모바일 웹페이지)</p> </div> <div data-bbox="616 766 940 957">  <p>(음악저작물 : 저작물 정보 모바일 웹페이지)</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data-bbox="268 973 582 1181">  <p>(영화저작물 : 저작물 정보 웹페이지)</p> </div> <div data-bbox="616 973 940 1181">  <p>(음악저작물 : 신작 관리단체 등록 저작물 정보)</p> </div> </div> <p style="margin-top: 20px;">※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혹은 최근 1년 이내 반복적 침해행위에 대한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요청서만 제출 가능</p>

관련조문 :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 ①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

● **요청자(본인/대리인) 확인 자료**

구분	내용
6-2	<p>[본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 ● (미성년자) 주민등록등본,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사본 제출 ● (사업자 또는 법인 등) 요청자 개인 신분증 외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사본 제출 <p>※ 일부 OSP의 경우, 온라인 접수 시 휴대폰 혹은 아이핀 인증으로 신분증 제출을 대체 ※ OSP별 개인정보의 요구 수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확인 후 제출</p>
6-3	<p>[대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나, 권리 위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 ● 본인(요청자)의 신 분증 외에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p>※ 일부 OSP의 경우, 온라인 접수 시 휴대폰 혹은 아이핀 인증으로 신분증 제출을 대체 ● 본인(요청자)의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제출</p> <p>※ OSP별로 서식이 상이할 수 있으나, 요청자(위임인) 및 대리인 정보, 위임내용 및 기간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 [불임] 위임장 서식(예) 참고 ※ 위임장이 없는 타인의 신청일 경우, 요청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필수</p>

관련조문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3조

영 제40조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에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진술서**

구분	내용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증빙자료의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부당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으로 인한 손해 배상 및 처벌의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 단, 저작권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정당한 권리가 없거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요청자가 배상해야 하며 ·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요청자는 이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관련조문 :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

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② 권리주장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경우 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관련조문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3조, 단서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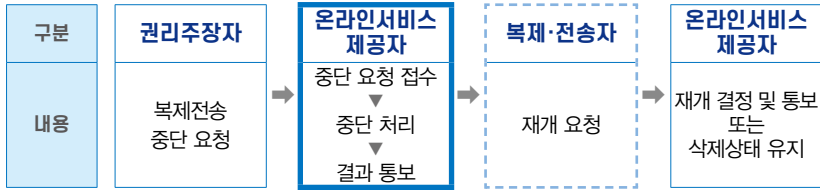
…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조문 :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6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본인 혹은 대리인)가 본인의 신분과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고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2. 복제·전송의 중단 처리



- ㉠ (복제·전송 중단 처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규정 절차, 서식에 따라 중단 요청이 접수된 게시물들의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조문 : 저작권법 제103조제2항

-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들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 ㉡ (복제·전송 중단 통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 중단 처리 결과를 권리주장자 및 복제·전송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련조문 : 저작권법 제103조제2항

- ②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들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기간 :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
- 방법 : 통보서(복제·전송자에게는 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첨부)
※ 통보서 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복제·전송자), 제42호(권리주장자), [붙임3] 참고
- 대상 : 권리주장자, 복제·전송자
- 내용 : 복제·전송 중단 결과, 복제·전송 재개 요청 안내 등

관련조문 : 저작권법 시행령 제4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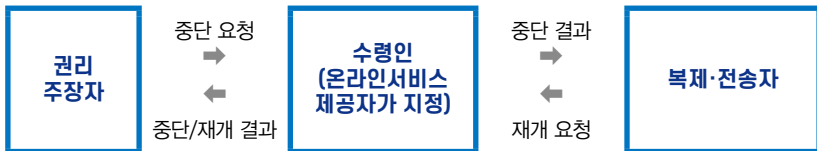
- ①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들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 및 복제·전송자(복제·전송자의 경우는 법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한다)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전송 중단요청서(복제·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4조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면,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 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수령인)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지해야 함



관련조문 : 저작권법 제103조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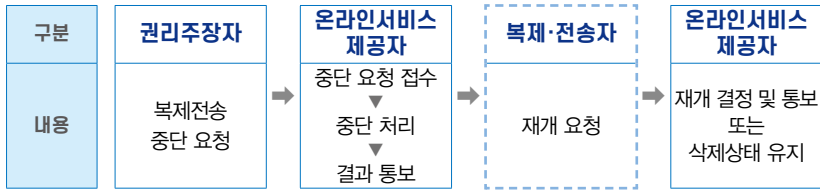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 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수령인을 지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복제·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소속부서명
2.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3.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 중단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복제·전송자는 복제·전송의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여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 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문 : 저작권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기간** :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방법** :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본인 확인, 권리 소명 자료 등 첨부)
 - ※ 요청서 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붙임4] 참고
- **권리 소명 자료** : 저작권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중단 요청과 동일) 혹은 저작권자의 복제·전송 허락을 증명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관련조문 :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

① 법 제10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요청자(본인/대리인) 확인 자료**

관련조문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5조

영 제42조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진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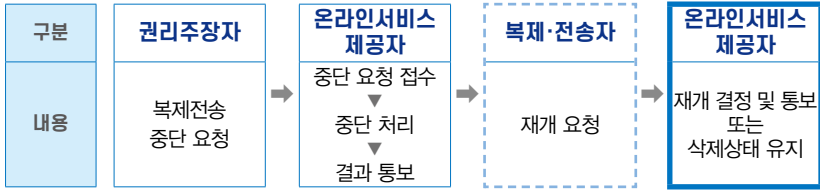
관련조문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②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복제·전송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한 경우 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1항에 따른 재개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관련조문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5조

... 다만,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복제·전송의 재개 결정 등



㉠ (재개 결정 및 통보) 복제전송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일 이내 재개 여부 결정 → (재개 결정 시) 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간 :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결정
- 방법 : 통보서(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첨부)
 - ※ 통보서 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붙임5] 참고
- 대상 : 권리주장자(재개 결정 시)
- 내용 : 복제·전송의 재개와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 통보 등

관련조문 : 저작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 ① 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 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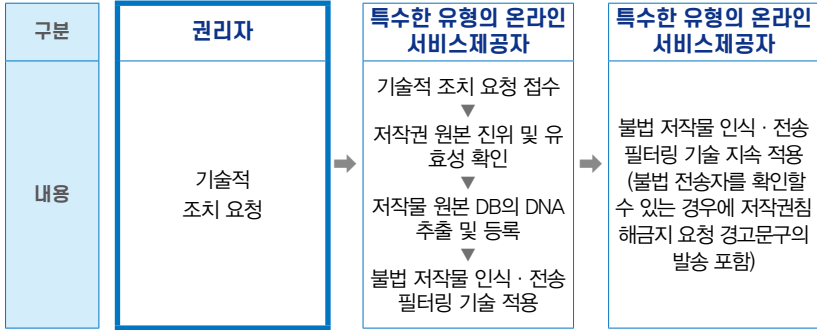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복제·전송 재개통보서에 복제·전송 재개요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게시물 삭제) 복제·전송의 중단 이후 재개의 요청이 없거나 재개의 요청이 부적합할 경우 등 해당 게시물을 영구 삭제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공지, 통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안내
- 이후 권리주장자, 복제·전송자 간 합의 혹은 관련 기관 및 소송 등에 의한 해결이 있을 수 있음

Ⅲ - ② 「기술적 조치」가이드라인

기술적 조치 요청 절차



-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요청(제출)하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조문 : 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2항)

-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요청방법**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운영 사이트별 저작권보호센터(혹은 침해신고센터, 고객센터 등)를 두고 기술적 조치 요청 온라인 접수를 위한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본인 확인(회원가입 필요한 사이트 있음)→기술적 조치 요청 페이지 내에서 저작물 정보(제호) 기재→본인 확인 자료, 권리 정보(저작권 등록증 사본, 저작물 원본 등) 필요서류와 파일 첨부→요청 등록

☞ **필요서류** : 개인/법인, 본인/대리인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며,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타인에 의한 요청일 경우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개인	단체(사업자 또는 법인 등)
공통 (본인, 대리인)	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저작권 증빙 서류(저작권 등록증 등) ④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문자·부호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저작권 증빙 서류(저작권 등록증 등) ⑤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문자·부호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대리인	⑤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⑥ 위임장(요청자 인감 또는 서명 날인)	⑥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⑦ 위임장(단체 대표의 인감 또는 서명 날인)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요청 접수 관련, 업체별 사이트 배럴구성 및 명칭, 안내 사항은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절차 및 방식은 동일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작성 방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6. 11. 8.>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양식)

1	요청자	성명(상호명) 전자우편주소 주소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2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저작물 (제호 등)	※ 대항일 경우 위촉 사본
	3	대리인	성명(상호명) 전자우편주소 주소

「저작권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구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저작물 등의 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 등을 요청하오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귀하

6

첨부서류

1.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 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다.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 등으로써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1.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청관리업자 또는 기간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최초 소명자료 제출일 : 년 월 일)에는 첨부서류 중 제1호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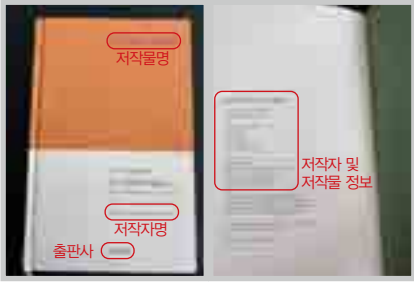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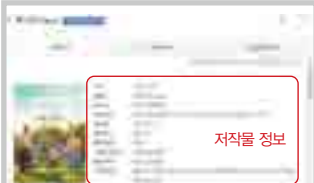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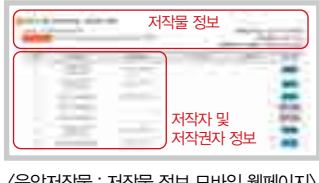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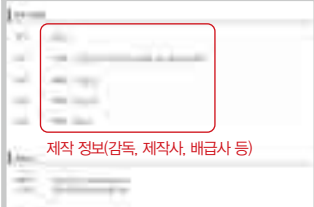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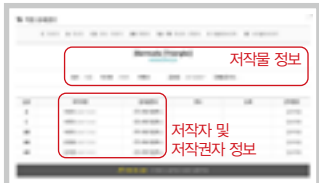
2.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필요한 조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13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	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조치 요청자(권리자) 정보 기재 : 성명, 연락처 등 ※ 본인 확인(신분증 사본 등) 및 저작권 증빙자료와 일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인 조치 요청 저작물 정보 기재 : 저작물명(대량의 경우 뒷면 별지 사용)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청의 경우, 권리자 외에 대리인의 정보를 기재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날짜와 신청인의 성명 기재 후 서명(또는 도장 날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을 접수하고자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명을 기재

㉠ 기술적 조치 요청 첨부서류

● 저작권 증빙자료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자가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성명, 이명 등이 표시된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예시) 저작물명, 공표일, 저작자 등이 표시된 화면 캡처 이미지 혹은 표지 등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저작권 등록증〉</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어문저작물(표지 등): 저작자 및 저작물 정보〉</p> </div> </div>
<p>6-1</p>	<div style="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1fr 1fr; ga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음악저작물 : 저작물 정보 모바일 웹페이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음악저작물 : 저작물 정보 모바일 웹페이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영화저작물 : 저작물 정보 웹페이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음악저작물 : 신작 관리단체 등록 저작물 정보〉</p> </div> </div> <p>※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혹은 최근 1년 이내 반복적 침해행위에 대한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요청서만 제출 가능</p>

관련조문 :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

제45조(권리자의 요청)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가.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나.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 요청자(본인/대리인) 확인 자료

구분	내용
6-2	<p>[본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중 택일하여 사본 제출 ● (미성년자) 주민등록등본, 청소년증, 여권 중 택일하여 사본 제출 ● (사업자 또는 법인 등) 요청자 개인 신분증 외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사본 제출 <p>※ 일부 OSP의 경우, 온라인 접수 시 회원가입, 휴대폰 인증으로 신분증 제출을 대체함</p> <p>※ OSP별 개인정보의 요구 수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확인 후 제출해야 함</p> <p>(예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증명사진 제외 정보 가림 처리 요청 사이트에 블라인드 미처리 시 접수 불가의 경우가 있음</p>
6-3	<p>[대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나, 권리 위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본인(요청자)의 신분증 외에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 신분증 종류 상동 <p>※ 일부 OSP의 경우, 온라인 접수 시 휴대폰 혹은 아이핀 인증으로 신분증 제출을 대체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요청자)의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제출 <p>※ OSP별로 서식이 상이할 수 있으나, 요청자(위임인) 및 대리인 정보, 위임내용 및 기간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해야 함. [붙임] 위임장 서식(예) 참고</p> <p>※ 위임장이 없는 타인의 신청일 경우, 요청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필수</p>

관련조문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영 제45조에 따라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조치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요청서에 영 제45조 각 호의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본인 혹은 대리인)가 본인의 신분과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고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조치를 통한 차단을 위해, 각 저작물의 DNA고유값을 추출하기 위한 권리저작물 원본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outline

Procedure

guideline

• Form

[붙임2] 복제·전송 중단 요청 위임장 서식(예)

위 임 장

위임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내전화번호)			
	주 소			
위임내용		<input type="checkbox"/> 계서증명(음사조치/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에 관한 모든 업무 <input type="checkbox"/> 재계사(이의신청/복제·전송의 재계) 요청에 관한 모든 업무 <input type="checkbox"/> 유행/동영상 저작권 보호 요청에 관한 모든 업무 <input type="checkbox"/> 기타(예, 사막프롬 내 저작권침해신고에 관한 모든 업무)		
위임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최대 1년)		
대리인 (수임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신고] 위임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마스크 worn 신분증 사본
수임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마스크 worn 신분증 사본
- [단체신고] 개인신고 시 수집항목 + 단체명, 단체주소, 대표자명, 단체 등록증 사본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부안 및 단체 서명, 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 확인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관한 법률 및 각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3년간 보존 후 즉시 파기, 마스크 worn 신분증 사본은 본인 식별이 필요하면 파기 완료한 후 즉시 파기합니다.

그 외의 신고서와 신고 내용은 관계법령 및 민중서상 소송 대응을 위해 보관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실 경우 동의에 O를 표시해 주세요)

위임인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수임인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위임인)은 ()의 계서를 차단을 위해 필요한 권리침해신고 업무를 위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장 중 수임인이 표명한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본인(위임인)이 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인(성명 또는 업체/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단체 직함 날인)

수임 : (인)으로 귀하

[붙임3-1] 복제·전송 중단 통보서(복제·전송자)

■ 저작권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일쪽)

복제·전송 중단 통보서 (복제·전송자)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자 (권리주장자)	성 명 (상호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제호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의 위치정보 (URL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	
중단 일시				

「저작권법」 제10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귀하께서 복제·전송하신 저작물은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 복제·전송이 중단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복제·전송자 ○ ○ ○ ○ ○ 귀하

※ 첨부서류 :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귀하께서 정당한 권리자로서 복제·전송하신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

① 성 명(상호명) :

② 전 화 번 호 :

③ 전자우편 주소 :

[붙임3-2] 복제·전송 중단 통보서(권리주장자)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 12호서식] (단독)

복제·전송 중단 통보서 (권리주장자)

복제·전송과 중단 저작권(제2호)	※ 대량일 경우 위쪽 사용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권의 위치정보(CMI 등)	※ 대량일 경우 위쪽 사용
중단 일시	

『저작권법』 제10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권리에어 요청하신 저작권의 복제·전송이 중단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권리주장자

☐☐☐☐☐☐ 위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

① 성 명(상호명) :

② 전 화 번 호 :

③ 주 소 :

④ 권리유원 주소 :

[붙임4]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8. 11. 30.)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일부)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자	성명(상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저작물	저작물 명(책호 등)	비대칭일 경우 저록 사영	
	원저자명(원저 등)	비대칭일 경우 저록 사영	
	출판일시		
제3자명	성명(상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저작권법,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연락처 000-0000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귀하

1.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요지는 “비대칭 복제·전송”이다.

2.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요지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저자 그 저작물 원저권리자로 표시된 저작물 등의 복제를 “비대칭” 또는 “그에 원저자의 저록”

나. 제3자-저록 등 또는 원저권리자로부터 표시된 저작물 등의 저록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저록”

다. 원저권리자를 “원저자”로 표시된 저작물에 “비대칭”의 복제를 위한 “저록”을 출간하는 “저록”/“저록”

즉, “그에 상당하는 저록”

3. “저작권법 제42조제1항”의 요지는 “비대칭 복제·전송”을 “비대칭 복제·전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비대칭 복제·전송”은 “비대칭 복제·전송”을 “비대칭 복제·전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5. “비대칭 복제·전송”은 “비대칭 복제·전송”을 “비대칭 복제·전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6. “비대칭 복제·전송”은 “비대칭 복제·전송”을 “비대칭 복제·전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7. “비대칭 복제·전송”은 “비대칭 복제·전송”을 “비대칭 복제·전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8. “비대칭 복제·전송”은 “비대칭 복제·전송”을 “비대칭 복제·전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9. “비대칭 복제·전송”은 “비대칭 복제·전송”을 “비대칭 복제·전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비대칭 복제·전송”은 “비대칭 복제·전송”을 “비대칭 복제·전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서식

[붙임6]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특이 제4호조치법) 시행령 2013. 11. 20.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붙임6)

요청자	성명(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자적분 (자료 등)	※ 해당없을 경우, 원본, 사본
-----------------------------------	-------------------

대리인	성명(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저작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법 시행령 제4호제1항에 따라 구제에 관한 통상성에 개시되어 있는 해당 자적분 중의 법적인 권리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후인 2)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 ○ ○ 권제

첨부자료	1. 저작권법 시행령, 제4호제1항 및 그에 해당하는 자료 2. 저작권법 시행령, 제4호제1항 및 그에 해당하는 자료와 일치함 3. 저작권법 시행령 제4호제1항에 따른 법 시행령 제4호제1항에 따른 통상성에 개시되어 있는 해당 자적분 중의 법적인 권리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저작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법 시행령 제4호제1항에 따른 통상성에 개시되어 있는 해당 자적분 중의 법적인 권리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증명하는 자료
------	---

특정사항

1. 저작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법 시행령 제4호제1항에 따른 통상성에 개시되어 있는 해당 자적분 중의 법적인 권리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을, 일에는 첨부서류 및 저작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법 시행령 제4호제1항에 따른 통상성에 개시되어 있는 해당 자적분 중의 법적인 권리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저작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법 시행령 제4호제1항에 따른 통상성에 개시되어 있는 해당 자적분 중의 법적인 권리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기술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조사를 요청하는 지침서(제호: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 임 장

	성명		생년월일
관리자 (위임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내용		<input type="checkbox"/>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요청 중 예 감한 오른 업무 <input type="checkbox"/> 「저작권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저작물 등의 법적인 전송을 차단 요청 등 에 관한 모든 업무	
위임기간		20__년__월__일 ~ 20__년__월__일 (최대 1년)	
대리인 (수임인)	성명		
	주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명목

[개인신규] 위임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마스크 된 신분증 사본
수임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마스크 된 신분증 사본
[단체신규] 개인신규 시 수감번호 + 단체명, 단체주소, 대표자명, 단체 등록증 사본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본인 및 단체 식별, 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 확인)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각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3년간 보관 후
삭제 하기, 마스크 된 신분증 사본은 본인 식별이 처리 완료된 후 즉시 파기합니다.

그 외의 신고서와 신고 내용은 관계법령 및 민·형사상 소송 대응을 위해 보관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실 경우 동의에 O를 표시해 주세요)

위임인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수임인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위임인)은 저작물에 권리자로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요청을 위한 업무를
위해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기간 중 수임인이 요청한 내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본인(위임인)이 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임·원(성명 또는 업체/단체명)

(서명 또는 인 / 단체 직인 날인)

수신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등 귀하

한국저작권보호원 열린상담실

전화상담



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번호

1588-0190으로 전화 후
저작권보호상담(6번)을 눌러주세요.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 ~ 1시)

온라인 상담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www.kcopa.or.kr** 접속 후

국민참여 → 저작권보호상담을 눌러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대면상담



대표번호 **1588-0190 → 6번** 홈페이지 **www.kcopa.or.kr**

전화 혹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 창구로 사전 예약 후 방문

최대 2인까지 방문 가능, 마스크 필수 지참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 ~ 1시)

코로나19의 국내상황에 따라 대면상담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